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O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1월 01일, 평창군수 제출
- O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07일 회부
- O 상정일자: 제25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2019년 11월 0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일자리경제과장)

가. 제안이유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전통시장의 인정(안 제6조~제10조)
- O 상권활성화구역 지정(안 제11조~제12조)
- O 임시시장의 개설·신고(안 제13조~제14조)
-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·지원(안 제15조~제17조)
- O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(안 제18조~제25조)
- 시장관리자의 지정·운영(안 제26조~제28조)
- O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(안 제29조~제37조)
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최순철)
 - 본 조례안은 평창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
 - 기존의 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가 부칙의 한시적 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며, 폐지된 조례안을 기본내용으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새롭게 조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 - 새롭게 위임 된 규정은 대부계약 갱신을 허락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, 전통시장의 인정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,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